

가정복지국 소관

1994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·세출추가경정예산(안)

검 토 보 고 서

1994.12

교 육 사 회 위 원 회

전 문 위 원

목 차

1. '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

가.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

나. 가정복지국소관 세출예산안 규모

2. 예산안 개요

○ 세항별 내역

3. 검토 의견

4. 참 고 자 료 : 별첨

1. '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

가.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안		기 정		증 △ 감	
		%	예 산 액	%		%
합 계	526,770,059	100.0	514,520,521	100.0	12,249,538	2.4
인 건 비	38,965,758	7.4	38,965,758	7.6	-	-
물 건 비	27,305,395	5.2	27,247,126	5.3	58,269	0.2
이 전 경 비	102,733,785	19.5	103,764,165	20.2	△ 1,030,380	1.0
자 본 지 출	337,184,915	64.0	324,099,896	63.0	13,085,019	4.0
용 자 및 출 자	5,011,500	1.0	5,011,500	1.0	-	-
보 전 재 원	1,705,378	0.3	1,705,378	0.3	-	-
내 부 거 래	9,115,950	1.7	9,016,562	1.8	99,388	1.1
예비비 및 기타	4,747,378	0.9	4,710,136	0.9	37,242	0.8

※ '9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 규모는 기정 예산액 5,145억 2천만원에 바하여 2.4%에 해당하는 122억 4천 9백만원이 증액된 5,267억 7천만원의 규모임.

나. 가정복지국소관 세출예산안 규모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안	기 정 예 산 액 (제2회추경)	증 △ 감	
				%
합 계	22,906,699	20,919,480	1,987,219	9.5
인 건 비	250,508	250,508	-	-
물 건 비	416,697	404,177	12,520	3.1
이 전 경 비	14,013,698	14,172,091	△ 158,393	△ 1.1
자 본 지 출	8,220,796	6,087,704	2,133,092	35.0
용 자 및 출 자	-	-	-	-
보 전 재 원	-	-	-	-
내 부 거 래	5,000	5,000	-	-
예비비 및 기타	-	-	-	-

※ 가정복지국소관 일반회계 '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액 209억 1천 9백만원에 비하여 9.5%에 해당하는 19억 8천 7백만원이 증액된 229억 6백만원 규모임.

2. 예산안 개요

예산안 내역을 세항별로 살펴보면,

첫째, 노인복지사업비는 2천 1백만원이 감액되었는 바,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- 노인교통비 및 농촌승차권 지원 정산액 | △ 2천 5백만원 |
| - 노인복지시설 수용 보호 | △ 1천만원 |
| - 노령수당 | △ 2천 4백만원 |
| - 경로당 운영비 | 2천 5백만원 |
| - 경로당 난방비 | 1천 3백만원 등이 |

각각 증액 또는 감액계상 되었음.

둘째, 아동복지사업비는 1억 1천 9백만원이 감액되었는바,

- |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- 아동복지시설 운영 | △ 4천 4백만원 |
| - 소년소녀가정세대보호 | △ 1천 9백만원 |
| - 아동복지시설 수용보호 | △ 7천 2백만원 |
| - 입양기관운영 | 5천만원 |
| - 부랑아시설운영 | 5백만원 |
| -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| 6천만원 등이 |

각각 증액 또는 감액 계상되었음.

셋째, 부녀복지사업비는 19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는 바,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- 도 여성회관 이전 신축 | 20억원 |
| - 장한여성대상 수상마을 상사업비 | △ 3천만원 등으로 |

각각 증액 또는 감액되었으며

넷째, 모자보호사업비는 1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는 바,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- 모자보호시설 운영 | △ 2천 1백만원 |
| - 부녀직업보도시설 운영 | △ 1천만원 |
| -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자녀학비 | △ 1천 9백만원 |
| - 저소득 모자가정 실고생 자녀학비 | △ 1천 8백만원 |
| -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| △ 4백만원 |
| - 모자보호시설 기능보강 | 5천 4백만원 등이 |

각각 증액 또는 감액되었음.

다섯째, 청소년복지사업비는 2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는 바,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- '94 청소년 육성정책 충청지역 순회 공청회 | 1천만원 |
| -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자 세미나 개최 | 1천 5백만원 등으로 |

계상되었음.

여섯째, 유아복지사업비는 1억 1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는 바,

-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- 보육시설 운영 | 5백만원 |
| - 보육시설 증·개축 | 1억 9백만원 등으로 |

계상되었음.

3. 검토 의견

1994년도 제3회 가정복지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,267억 7천만원의 4.3%인 229억 6백만원으로 국소관 기정예산액 209억 1천 9백만원에 비해 9.5%에 해당하는 19억 8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음.

이번 예산안은 '94년도 국고보조사업의 마무리 정산결과에 따른 추가보조내시로 도비부담금을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한 것으로 불가피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되나 도 여성회관 이전·신축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.

4. 참고 자료 : 별 첨